

■ 법률 부칙

제7조(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경감·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이 법 시행 전에 경감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6조제5항에 따른다.

<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>

개정 전	개정 후
<p>제23조(기업부설연구소)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”란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등이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내에 설치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는 제외한다.</p> <p>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 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”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.</p>	<p>제23조(기업부설연구소)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”란 「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.</p> <p>② 법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·원천 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”란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부설 연구소를 말한다.</p> <p>1.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소재 기업으로서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9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성장·</p>